

『2025년 협동조합 성장지원 공모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경남지역 (사회적)협동조합의 성장 기반 마련과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지역사회 문제 해결 기여를 위한 『2025년 협동조합 성장지원 공모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경남지역 (사회적)협동조합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5년 5월 28일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1 사업목적

□ 사업목적

- 단계별 기술·시제품개발 비용 지원을 통한 협동조합 성장기반 마련
-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을 통한 사업경쟁력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 협동조합 주도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기여

□ 주최/주관

- 주 최 : 경상남도
- 주 관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원대상) 주사무소 소재지가 경남 내에 위치하는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① 시·도지사에 신고한 협동조합

②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신청제한) ※ [6.유의사항 내 \[신청 제한사항 및 지원제외\]](#) 반드시 확인

□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5. 09. 30.

□ 지원 규모

- 5개소 내외 (사회적)협동조합
- 지원한도 최대 6백만원
-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예정

□ 지원유형

- 지원 목적 및 지원프로그램에 따른 유형별 지원 (1개 유형 선택 신청)

공통주제	지역 사회 문제 해결 기여	
지원 유형	시장 진출 지원	시장 경쟁력 강화
대상 조합	제품·서비스를 보유하지 않았거나 보유 아이템이 시장진출 준비 및 초기 단계로 사업화 계획을 가지고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협동조합	구체적인 제품·서비스를 보유하고 시장에 이미 진출한 상태로, 품질개선을 통한 제품 시장경쟁력 강화를 희망하는 협동조합
집중 지원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컨설팅 (사전/사후) - 제품·서비스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춤형 컨설팅 (사전/사후) - 제품·서비스 개발 및 개선 - 홍보·마케팅 지원
규모	5개소(5회)	
지원한도	최대 6백만원	
지원운영	간접지원 / 부가세 별도 (기업 자부담)	

* 간접지원 : 지원기관이 지원금을 선정기업이 아닌 선정기업과 계약을 맺은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3 지원내용

□ 지원항목 (※ ①, ② 필수)

① 유형별 지원 프로그램 맞춤형 사업화 지원

세부 지원프로그램	지원목적	지원내용
① 시제품 제작	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연구개발비 - 상용화 개발 가능 시제품 제작비 -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
② 디자인 및 상품화	제품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디자인 및 상품화 개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표개발 (네이밍, 브랜드 개발 비용) - 상용제품 디자인 개선 - 마케팅용 샘플 제작 - 패키지 디자인 개발 및 개선 등
③ 마케팅	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마케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 홍보광고 (제품 및 서비스) - 제품 및 서비스 홍보 동영상 제작 - 제품 및 서비스 카탈로그 제작 등

* 지원프로그램 : 기업 수요에 따라 지원프로그램 중 필요한 프로그램 자율 선택 가능

② 참여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 (사전진단) 사업 목표의 명확화 및 실행 가능성 극대화
- (사후진단) 사업성과 분석 및 지속 성장 전략 수립

분야	세부 내용	프로그램 진행
사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기업 진단, 목표 설정 - 사업 환경 분석, 대응 전략 수립 - 사업 계획 타당성 검토, 수행계획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컨설턴트 1:1 매칭 - 기업별 2회 진행 (5개소) - 프로그램 내용 (공통)
사후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과 분석, 성공·실패 요인 파악 - 사업 아이템 개선, 사업기회 발굴 - 문제점 해결, 지속성장 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회 : 사전진단 컨설팅 - 2회 : 사후진단 컨설팅

4 신청방법

□ 신청 기간

2025. 5. 28.(수) ~ 6. 20.(금) 18:00 [3주간] (18시 접수분까지 유효)

□ 신청방법

이메일(moducoop@moducoop.com) 제출.
[오프라인 제출 없음 / 메일 주소 유의]

□ 제출서류

- 아래 표에 지정된 서류 일체를 PDF 파일로 전환 후 상기 이메일로 제출.

연번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신청서	[서식 1] 활용
2	사업수행 계획서	[서식 2] 활용
3	소요예산 산출근거 자료 (견적서 등)	
4	청렴서약서	[서식 3] 활용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표자 및 실무담당자)	[서식 4] 활용
6	협동조합 신고확인증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7	정관 사본	
8	사업자등록증명 사본 ※ 발급처: 홈택스(www.hometax.go.kr)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9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말소사항 포함) ※ 발급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10	표준재무제표 ※ 발급처: 홈택스(www.hometax.go.kr)	최근 2개년 (2023~2024년)

5

평가 및 선정

□ 선정방법

○ (1차) 서류검토

- 신청요건, 기업 현황 파악 및 사업계획 확인 (필요시 현장실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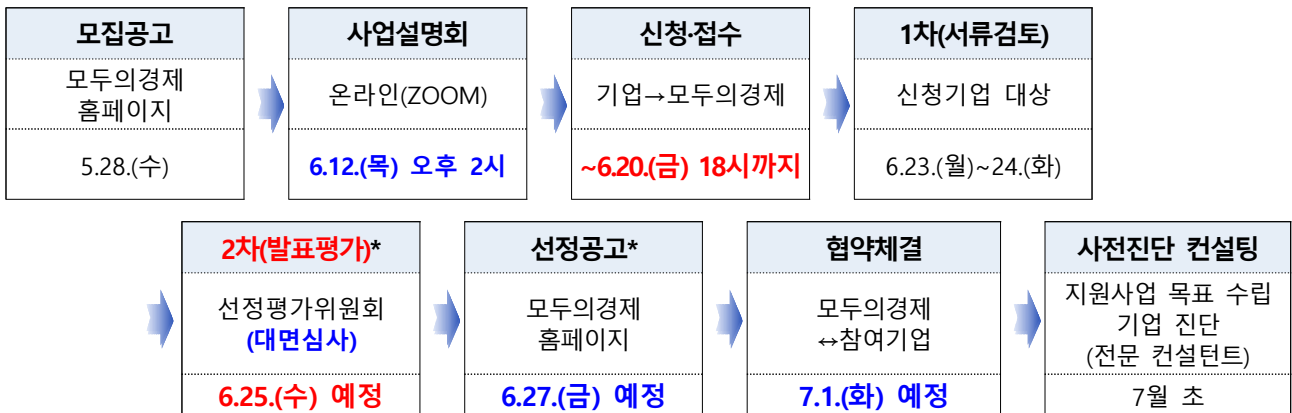
○ (2차) 발표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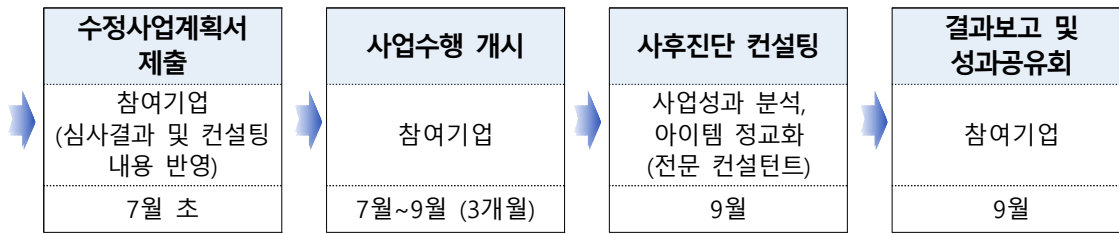
-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심사평가위원회를 구성
- 신청이 많을 경우 서면평가를 통해 지원 규모의 15배수 이내 발표평가 대상기업 선정
-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사업수행 의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수행계획서에 기반한 **PT 발표심사** 진행 (6월 25일 (수) 14시 예정)
- 참여기업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 선정기준

평가 항목	세부평가 항목	배 점
지원 필요성 (20점)	- 사업지원의 필요성	10
	- 수익모델 개발 가능성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비 예산 적정성 (50점)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명확성	10
	- 사업수행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20
	- 사업비 예산편성의 적정성	10
	- 사업비 예산 근거의 타당성	10
성장 가능성 및 기대효과 (30점)	- 지원사업 이후 참여기업의 성장 가능성 (매출 및 고용향상)	10
	- 성과물의 사회적 가치 및 파급효과	10
	- 성과물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	10
총 점		100

□ 추진절차 및 일정 (안) * 추진 일정은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발표평가 대상기업 안내 : 대상기업 개별 연락

* 선정공고 : 모두의경제 홈페이지 공고 및 선정기업 개별 연락

6 유의사항

□ 신청 관련

- 신청종료(6.20. 18:00) 이후 기제출 서류의 수정 및 보완 불가
- 신청서류의 미비, 누락 등의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 신청 제한사항 및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신청 제한사항 및 지원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기타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평가 관련

- 심사 및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주관기관(모두의경제)의 고유권한이며, 평가 점수,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 일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 신청한 지원사업비는 평가결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 관련

- 사업 운영·관리, 사업비 산정 및 정산 기준 등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지방보조금법」에 따름
- 사업비는 지원금으로 구성되며 기업자부담 없음 (**부가세 별도**)
- 총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 (**※인건비, 회의비, 여비 등 편성 불가**)

[지원 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 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시제품 개발에 필요한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 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지원금은 참여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주관기관(모두의경제)에서 검토 후 참여기업과 계약한 공급업체에 직접 지급 원칙
- 공급업체는 참여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 공급업체 : 참여기업이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

[공급업체 활용 시 유의사항]

- 공급업체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선정
 - 단, 공급업체 선정에 대한 견적서, 타견적서(비교견적서) 등을 구비, 제출하여야 함
- 공급업체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함
- 공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상 업태 및 종목이 참여기업이 공급받고자 하는 용역 및 구매와 관련된 업종이어야 함
- 공급업체가 참여기업의 조합원이거나 조합원과 관계된 곳은 불가능

- 협약 시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주관기관(모두의경제)과의 사전협의 없이 변경, 추가, 삭제 불가

□ 지원철회

- 사업수행 개시 후 제출한 수정사업계획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되거나, 기간 내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 목적 외 사업비 사용, 개인 자금으로 유용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사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 보고 의무 및 협조 사항

- 참여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모두의경제에서 진행하는 성과공유회 등의 행사 참여 및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함
- 수행점검을 위한 중간보고서 및 사업종료 후 사업 완료 보고서 등을 요청 받을 시에는 소정 양식에 따라 신속히 보고하여야 함

7

문의처

주관기관	전담부서	사업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본부	선임연구원 김선정	055-266-7970	moducoop@moducoop.com
		(우5140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증축동 410호		